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수영장 수질 검사 주기적 실시 이행방안 마련

관 계 기 관 관광체육국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안전·위생기준'에는

수영장 수질은 〔표 1〕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 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 취지상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래 각 공공수영장 운영주체는 〔표 1〕 수영장 수질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수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수영장 수질유지 기준

항목	단위	수질기준	항목	단위	수질기준
유리잔류염소	㎎/ℓ	0.4 ~ 1.0	대장균군	양성	시료 10㎎씩 5개 중 2개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 ~ 8.6	비소	㎎/ℓ	0.05 이하
탁 도	NTU	1.5 이하	수은	㎎/ℓ	0.007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ℓ	12 이하	알루미늄	㎎/ℓ	0.5㎎ 이하

위와 관련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수질검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질 검사 주기를 정한 매뉴얼[1]을 만들어 각 공공수영장 운영주체에게 권고한 바 있다.

〔표 2〕 수영장 수질검사주기 및 측정항목

1) 「체육시설(수영장) 안전점검 계획」 '17.5.22, 체육정책과-6380호(수영장 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구분	검사주기		검사항목	비고
	성수기(7~8월)	비수기		
간이 수질검사	주 2회 이상	월 1회 이상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종합 수질검사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 중금속 항목(비소, 수은, 알루미늄)은 연 1회(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그런데도, 마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5개소에서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당일 기준 1주 이상 종합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수질관리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수질검사 주기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매뉴얼상 수질검사 기준	현 황
1	마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종합수질검사 성수기(7~8월) 주 1회 이상	7월 중 미실시 (7.11. 현장점검 시 기준)
2	잠실2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7월 중 미실시 (7.17. 현장점검 시 기준)
3	문래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중금속검사 년 1회	최근 1년간 미실시 ('18.7월 현장점검 시 기준)
4	수서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5	동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여성정책담당관 (◎◎◎◎◎◎◎◎◎◎)		

이러한 이유는 수질검사 주기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 체육시설과 매뉴얼에서 정한 수질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영장 지도·감독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는 수영장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 주기와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건의 또는 공공수영장 운영자(수탁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은, **수질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개정건의, 기타 공공수영장 운영자(수탁자)가 수영장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